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고용노동부, 2023. 10

I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 ☞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 '23.10.1. 시행 예정

2 회계공시 목적

- ☞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과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과 전체 근로자의 신뢰를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계공시 대상

- ☞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지역별·업종별·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을 의미
(예시) 단위노동조합인 A 산업별 노동조합이 B지부를 두고 그 아래 C기업 지회를 두는 경우, C의 상급단체는 A와 B가 됨

** 산하조직은 내부조직(지부·지회·분회 등)을 의미

4 회계공시 방법

(공시내용) 2022년도* 결산정보(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항목 등)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작성('23.10.1. 운영 개시)

- * 위 주소 이외에 노동포털 홈페이지(<http://labor.moel.go.kr>)를 통해서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 가능
- *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FAQ의 『사용자 매뉴얼』 참고(공시 등록기간) '23.10.1.~11.30.(2개월 간)

5 회계공시 혜택

☞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정보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 '23.10.1. 시행 예정)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노동조합(산하조직)에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다만,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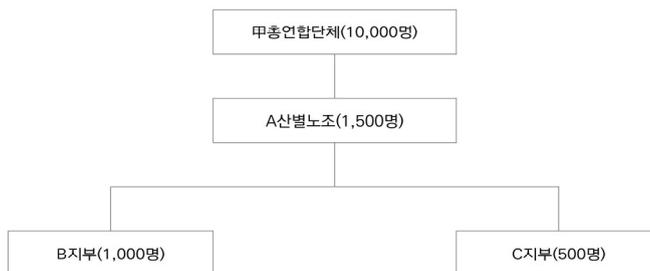
* ①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 ②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 결산정보 공시를 전제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있는 다른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 상응하여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급단체의 경우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결산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회계공시 범위 예시 >

(예시1) A 산업별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이 甲 총연합단체(10,000명)에 가맹하였고, A가 산하조직으로 B 지부(1,000명)와 C 지부(500명)를 둔 경우





- ① 甲, A, B가 공시하면 B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② 甲, A가 공시하면 C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예시2)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D 노동조합(조합원 수 1,500명)의 경우 : D가 공시하면 D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 (예시3) 아무 상급단체에도 가맹하지 않은 E 노동조합(조합원 수 500명)의 경우 : E의 공시여부에 관계 없이 E의 조합원에 세제혜택 부여

6 회계공시 제도설명·교육 안내

(교육내용) 노동조합 회계 관련 기본 교육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
 (교육방법) 고용노동부 유튜브* 및 회계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노동조합회계 공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https://youtube.com> 접속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온라인 교육" 검색 ('23.9.25.부터 시청 가능)

** <http://labor.moel.go.kr/pap> 접속 → FAQ 게시판 ('23.10.1.부터 시청 가능)

II 노동조합 회계공시 항목

1 노동조합 회계의 의미와 중요성

- 노동조합 회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예금, 상품, 건물, 비품, 채권, 채무 등 각종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 기록·계산·정리하여 재정운영 성과, 재무상태 등 결과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는 노동조합 회계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집행부(임원)는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선출한 대리인으로서 재정 집행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조합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노동조합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 회계의 구성요소

- 노동조합 회계는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 ① 재무상태표 : 회계연도 말일 기준의 재무 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보고서
 - 자산 : 현금, 예금, 토지, 건물 등 노동조합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 부채 :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

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② 수지계산서 :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현금의 유입)과 지출(현금의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
 - 조합원은 재무상태표,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산·부채 현황과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표준서식은 노동조합의 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작성 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3 노동조합 회계 공시항목

가. 회계 구분

- 노동조합이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보조금사업회계, 수익사업회계를 운영하는 경우, 각 회계별로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일반회계 :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등으로 운영하는 회계
 - 특별회계 : 정기예금 등 적립금 회계, 기금회계(예 : 쟁의기금), 일반적인 조합비 외의 특별조합비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회계
 - 보조금사업회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회계
 - 수익사업회계 :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의 회계

나. 자산 및 부채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자산	현금 및 예금	토지	건물	기타자산	부채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 자산 : 현금, 단기예금, 장기예금, 임차보증금, 토지, 건물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 ① 현금 및 예금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가액
 - ② 토지 :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임야, 전답, 건물부속토지,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

- ③ 건물 : 노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의 취득가액
- ④ 기타자산 :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과 매출채권, 단(장)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임차보증금 등 현금·예금, 토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예 :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미회수분)
 - 단(장)기대여금 :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채권(재무상태표일로부터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 그 외는 "장기"로 분류)
 -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예 : 조합비미수금)
 - 미수수익 : 수익은 발생하였으나, 그 회계연도에 현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예 : 정기예금 미수이자)
 - 선급금 :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
- 부채 : 매입채무, 단(장)기차입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예수금, 퇴직급여 총당부채 등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 매입채무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출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
 - 단(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년 이내(단기) 또는 1년을 초과하여(장기) 상환될 차입금
 -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예 : 비품을 취득한 후 회계연도말 이후 지급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 보유하고 있는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향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
 - 예수금 : 장차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채무로 일단 금전을 받고 그 후 타인 또는 그 타인을 대신하는 제3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는 채무(예 : 급여 관련 4대 보험료, 원천세)
 - 퇴직급여총당부채 :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 수입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 원)										
구분	수입 총계	전년도 이월금	조합비	상급 단체 교부금	하부 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입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 수입 총계 : 당기 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합계
- 당기 수입 :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 유입
 - ① 조합비 :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에 직접 납부한 조합비
 - ② 상급단체 교부금 : 단위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
 - ③ 하부조직 부과금 :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부과금 등(예 : 가맹비, 의무금)
 - ④ 후원금 : 조합원이 아닌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 ⑤ 타회계 전입금 : 회계 간 전입으로 인한 수입 금액, 지출현황의 "타회계 전출금" 지출금액과 일치
 - ⑥ 보조금 수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 ⑦ 수익사업 수입 :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 수입 총액
 - ⑧ 기타 수입 : 수입 중에서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입,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 전년도 이월금 : 회계별로 전기 말 현금 및 예금의 잔액

라. 지출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㉘ 지출 총계 (-㉙+㉚)	㉙당기 지출						
		㉚일반관리비용			㉛사업수행비용			
		㉜ 인건비	㉝업무추진비	㉞기타운영비	㉟총회 등대회비	㊱조직사업비	㊲정책사업비	㊳교육·홍보사업비
㉑ 총계(=㉒+㉓+㉔+㉕)								
㉒ 일반회계								
㉓ 특별회계								
㉔ 보조금사업회계								
㉕ 수익사업회계								

지출현황(계속)							
(단위 : 원)							
구분	㉑당기 지출(계속)						㉕차년도 이월금
	㉓사업수행비용(계속)		㉑상급 단체 부과금	㉒하부 조직 교부금	㉔타회계 전출금	㉒기타 지출	
	㉓ 교섭·쟁의 사업비	㉔기타 사업비					
㉑ 총계(=㉑+㉒+㉓+㉔+㉕)							
㉑ 일반회계							
㉒ 특별회계							
㉓ 보조금사업회계							
㉔ 수익사업회계							

- 지출 총계 : 당기 지출과 차년도 이월금의 합계

- 당기 지출 : 당해 회계연도의 현금 유출

① 일반관리비용 : 사무국 조직 운영과 관련한 비용

- 인건비 :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업무추진비 : 임·직원의 직급·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및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기타운영비 :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외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등 사무국 조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② 사업수행비용 :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 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총회 등 대회비 :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조직사업비 : 신규 조합원 가입,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 신설·확대·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정책사업비 :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교육·홍보사업비 : 신규 조합원 교육,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교섭·쟁의사업비 :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쟁의·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
- 기타사업비 : 사업수행비용 중에서 총회 등 대회비, 조직사업비, 정책사업비, 교육·홍보사업비, 교섭·쟁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③ 상급단체 부과금 : 산하조직이 단위노동조합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

- 단체 등에 납부하는 부과금 등(예 : 가맹비, 의무금)
- ④ 하부조직 교부금 : 단위노동조합이 산하조직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연합단체가 단위노동조합 등에 배분하는 교부금 등
- ⑤ 타회계 전출금 : 회계 간의 전출로 인한 지출로, 수입현황의 "타회계전입금" 수입금액과 일치
- ⑥ 기타 지출 : 지출 중에서 일반관리비용, 사업수행비용, 상급단체부과금, 하부조직교부금, 타회계전출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수입총계"에서 "당기 지출"을 차감한 금액

마. 점검사항

- 수입 총계 = 당기 수입 + 전년도 이월금
지출 총계 = 당기 지출 + 차년도 이월금
 - (예시) 2022년의 현금 유입, 즉 당기 수입이 200만원이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원이라면, 수입 총계는 당기 수입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5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이 됩니다.
 - 이때, 2022년의 현금 유출, 즉 당기 지출이 100만원이라면, 수입 총계 7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600만원은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되고, 지출 총계는 당기 지출 100만원에 차년도 이월금 600만원을 더한 700만원이 되는데, 이는 수입 총계 700만원과 금액이 같습니다.
- 전년도 이월금 =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의 현금 및 예금
차년도 이월금 = 당해 회계연도 말 기준의 현금 및 예금
 - (예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온 이월금, 즉 전년도 이월금이 500만원이라면, 이는 2021년 12월 31일의 현금 및 예금과 같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현금 및 예금 잔고가 500만원이어야 이를 2022년 1월 1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찬가지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 즉 차년도 이월금이 600만원이라면, 이는 2022년 12월 31일의 현금 및 예금과 같습니다.
- 타회계 전입금 총계 = 타회계 전출금 총계
 - (예시) 특별회계 재정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0만원을 전출한다면, 일반회계의 입장에서 타회계 전출금은 1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입장에서 타회계 전입금은 100만원입니다.
 - 따라서 타회계 전출금과 타회계 전입금이 일치합니다.